

## 촬영허가 가이드라인(제24조 및 제28조 등 관련)

구분	세 부 내 용	비고
기본 방침	1. 공능유적기관에서의 촬영은 해당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2. 공능유적기관에서의 촬영은 해당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내용	3. 역사적 사실 촬영의 경우 고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증 미비의 경우 불허 할 수 있다.	
관리	4. 작품 당 공능유적기관별 촬영 일수는 월 3일만 촬영 할 수 있다. 5. TV드라마, 극영화, 광고영화 등 상업용 촬영 중 관람환경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촬영은 휴관일 촬영을 원칙으로 한다. 6. 촬영의 세부사항은 공능유적기관과 협의하고,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7. 촬영허가를 받은 후 해당 공능유적기관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촬영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8. 허가조건 준수 등 확인·감독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공능유적기관 관계자가 촬영에 동반할 수 있다. 9.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신청자(사업자)는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11.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2. 신청자(사업자)는 해당 공능유적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한다.	
장비 및 소품	13. 박석(薄石: 평평한 돌)·월대(月臺: 넓은 기단 형식의 대)·건물 내부에는 발전차, 크레인 등 대형 촬영 장비를 반입 할 수 없다. 14. 장비 및 소품은 건물 등 시설물과 1m 이상 떨어져 설치 및 보관하여야 한다. 15. 박석(薄石: 평평한 돌)·월대(月臺: 넓은 기단 형식의 대)에 촬영을 위한 장비를 보관할 수 없다. 16.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17. 반입 불가 품목(별도 허가 필요) 가. 화재 및 폭발 우려가 있는 물품 나. 사적지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품 및 물품 다. 허가받지 않은 차량과 촬영 소품용 차·우마차·마필 및 기타 동물 등	